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대상에 대한 구체화(안 제4조)
- 용역과제의 선정(안 제5조)
-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제2항~제4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용역실명제 신설(안 제13조)
- 비밀유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 업무 수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임.
- 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등 심의제외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 또한, 용역실명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용역과제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 관리로 구미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